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개정내용 요약

시행일: 2020. 03. 01

- 01**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개정법 제12조 제1항, 각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
- 02**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전체 위원수 5~10명에서 10~50명으로 증가(개정법 제13조), 학부모 위원수가 과반에서 1/3이상으로 감소, 다만 학부모는 개별학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였다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내 학교 소속 학부모로 선정 범위가 넓어짐
- 03**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조항 신설(개정법 제13조의2).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②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피해학생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④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⑥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전담기구는 학교장에 의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 0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한자가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개정법 제17조 제1항)
- 05** 불복절차가 피해학생, 가해학생, 1~9호 처분 불문하고 교육장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단일화(개정법 제17조의2).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법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기존과 같음.

학교 학폭위 대신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 설치



종전규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내용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변경



종전규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내용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조항 신설



개정내용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한자가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



종전규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내용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복절차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단일화



종전규정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내용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